

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

1. 심사결과

- 가. 제출일자 : 1999. 12. 15.
- 나. 제출자 : 광주광역시 서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1999. 12. 18.
- 라. 상정일자 : 제91회 서구의회(정기회)회기중
제6차 사회도시위원회(1999. 12. 22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경제과장 이 재 천)

가. 제안이유

- 농가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의 융자금 대부신청 규정 중 연대보증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농가소득금고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융자금의 대부신청 완화 (제9조)

융자금 대부 신청시 당해 동 거주자로서 2명 이상의 연대 보증인 규정을 “서구 관내 거주자로서 1명”으로 개정하여 융자금 대부신청 규정을 완화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박 화 순)

-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, 행정 간소화와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
- 저소득농가의 융자금 대부신청 규정 중 연대보증제도를 “당해 동 거주자로서 2명 이상”을 “서구 관내 거주자로서 1명”으로 규정을 완화하여 저소득 농가에서 농가소득 육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아 자립기반에 이룩할 수 있도록 주민편익 도모와 행정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의 요지 : 별첨

7. 심사결과 : 수정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9. 기타사항 : 없음

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1999. 12.

제 출 자 : 광주광역시서구청장

1. 개정이유

농가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의 용자금 대부신청 규정 중 연대보증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농가소득금고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○ 용자금의 대부신청 완화(제9조)

용자금 대부신청시 당해 동 거주자로서 2명 이상의 연대보증인 규정을 “서구 관내 거주자로서 1명이”으로 개정하여 용자금 대부신청 규정을 완화

3. 참고사항

○ '99 제1차 서구 서구규제개혁위원회('99. 3. 25)심사 (완화 결정)

○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

광주광역시서구조례제 호

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

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9조제2항 중 “당해 동 거주자로서 2명 이상의”를 “서구 관내 거주자로서 1명이”으로 한다

(별지 서식) 중 “연대보증인 주소 성명 인, 연대보증인 주소 성명 인, 연대보증인 주소 성명 인”을 “연대보증인 주소 성명 인”으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용자금의 대부 신청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전항의 대부신청서에는 <u>당해 동 거주자</u> <u>로서 2명 이상의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9조(용자금의 대부 신청)</p> <p>① 현행과 같음</p> <p>② <u>서구 관내 거주자로서</u> <u>1명이</u></p>

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1999년 12월 22일

제 출 자 : 김동식 위원 외 3인

수정사유

- 용자금 대부 신청시 주민편익 차원에서 수정하여 가결함.

주요골자

- 개정안 제9조 제2항 중 대부신청서에는 “서구 관내 거주자로서 1명”을 “광주광역시 관내 거주자로서 1명”으로 한다.

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

○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“서구 관내 거주자로서 1명” 을 “광주광역시 관내 거주자로서 1명”으로 한다.

수정안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9조(융자금의 대부신청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전항의 대부신청서에는 <u>당해 동 거주자로서 2명 이상의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</u></p>	<p>제9조(융자금의 대부신청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전항의 대부신청서에는 <u>서구 관내 거주자로서 1명이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</u></p>	<p>제9조(융자금의 대부신청)</p> <p>① 현행과 같음</p> <p>② 전항의 대부신청서에는 <u>광주광역시 거주자로서 1명이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.</u></p>